

신내동 업무용지 복합개발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736
----------	------

2026. 6. 12.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5. 26.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2026. 5. 27.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6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6. 6. 12.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1. 제안이유

- 가. 본 사업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중랑구 생활권계획)」에 따른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자 서울시장^{민선7기~9기} 주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의 중랑구 신내동으로의 일부 이전과 문화집회시설(공연장) 확보 등을 위해 업무복합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리츠'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나. 2019년 8월 서울시장의 SH 사옥 이전 발표를 시작으로 市-區-SH 간 중랑구 이전 협약체결, '20.12. 도시관리계획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1.07. SH 자체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사

업타당성 평가 등이 진행되었으나, 낮은 사업성과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다. 이에 '25.11. 정부가 신규 도입한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하여 사업시행방식을 출자사업으로 변경 및 도입시설의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됨.

라. 따라서, 정책 실현성을 확보하고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리츠 설립 및 출자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대상

1) 기관명칭 : (주)신내동업무용지복합개발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칭)

2) 총사업비 : 5,151억 원(예상)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 기준 적용

3) 총출자금 : 1,547억 원

○ 현금출자: 50억원(최소자본금)

○ 토지 현물출자: 1,497억원 *현물출자금액은 출자시 감정평가하여 확정 예정

4) 출자자 현황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 1,547억 원

5) 사업기간 : 2026년 7월 ~ 2032년 상반기

나. 사업방식

○ SH에서 현금출자(50억)를 통해 프로젝트리츠가 설립 자금을 조성하고 공사 보유 토지 현물출자, 리츠가 개발사업 시행, 준공 후 리츠 청산 시 SH는 재산 배분 등을 통해 업무시설 및 공연장 확보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익시설(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을 통해 건설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됨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이 동의안은 SH의 사옥 이전 계획('19.발표)에 따라, 중랑구 신내동 업무용지에 업무시설, 공연장 및 공동주택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프로젝트리츠¹⁾에, SH가 보유한 토지 및 현금을 출자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²⁾을 받으려는 것임.

〈 SH 출자 규모 〉

구분	금액	비고
계	1,547억원	
현물출자	1,497억원 ^{예상}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
현금출자	50억원	프로젝트리츠 최소자본금

〈 SH 사옥 이전 추진 경위 〉

- '18.08.19. :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이전 계획 발표
- '19.08.28. : SH 사옥 이전 발표(市)
- '20.12.24.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市고시 제2020-580호)
 - 결정(변경) 취지: 학생 수요부족으로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지역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실현을 위한 SH 사옥 이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용도지역 변경(2종 일반주거→준주거)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공공기여율 45%
- '21.07.16.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완료
 - (재무성, 경제성 미달) PI=0.12, B/C=0.82
 - (재원부족) 개포동 사옥 매각대금 포함 시에도 590억 원 부족
- '22.08. : 'SH 중랑구 신축 이전으로 신내·망우동 균형발전 촉진' 공약 발표(민선 8기)
- '25.09.08. : 신규 리츠 설립 계획(안)(사장 방침 제441호)
- '25.09.29.~ '26.05.28. : 출자 타당성 검토(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1) 가칭(주)신내동업무용지복합개발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근거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신설 2025.5.27.)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사업대상지는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원(13,658.1 m^2)으로, '05년 신내 택지개발지구(2지구) 내 학교용지로 결정³⁾되었으나 학생 수요 부족 등 사유로 장기간 방치되다가, '20년에 SH 사옥 이전을 전제로 학교용지를 업무시설 등 용도로 변경하면서 용도지역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음⁴⁾.

〈 사업대상지 개요 〉

구 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05)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20)
위 치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원(신내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면적	13,658.10 m^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학교(고등학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등
용적률/건폐율	200%이하 / 50% 이하	400%이하 / 6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최고 90m이하
공공기여	-	토지가치의 45%

위 치 도



현장사진



- 당초⁵⁾에는 개포동 사옥을 매각하고 본사 전체를 이전할 계획으로, 신사옥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8,200 m^2 (전체 연면적 중 SH 사용 면적은 약 65,000 m^2)이었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분(토지가치의 45%⁶⁾)은 공연장으로 건설 후

3)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건고 제2005-480호, 2005.12.29.)
 4) 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20-580호, 2020.12.24.)
 5)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지방공기업평가원, 2021.7.)
 6) SH는 공공기여량 결정을 위해 서울시와 총 6차례 협의('25.7.~'25.8.)에서 원활한 사옥 이전을 위해 정책적인 공공기여 하향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특혜시비 등 문제점이 있어 공공기여량 하향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출자기관의 비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성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임.

기부채납하는 것이었음.

- 당초 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는 3,708억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7)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PI=0.12)⁸⁾ 및 경제적 타당성(B/C=0.82)⁹⁾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또한, 자원조달 계획상 개포동 사옥 매각대금(약 3,200억원, '23년말 매각기준)을 반영하더라도 SH가 자체로 조달해야하는 재원이 590억원(법인세 포함)에 달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음¹⁰⁾.

〈 개포동 사옥 및 신사옥 비교 〉

구 분	개포동 사옥	신사옥 계획('21)
소재지	강남구 개포로 621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원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9,238.50㎡	13,658.10㎡
연 면 적	43,745.41㎡	88,200.00㎡
업 무 시 설	22,371.94㎡	74,478.40㎡ * SH 사용 면적: 약 65,000㎡, 일부 임대
근린생활시설	2,373.97㎡	4,271.60㎡
관람집회시설	2,819.13㎡	9,450.00㎡
기타 및 주차장	16,180.37㎡	(상기 면적에 포함)
총 수	지하3층, 지상16층	지하4층, 지상15층
기부채납	-	공연장(600석 규모) ^{480억}

[참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7호, 2018.11.13.)
제5장 협상주요기준 ▶ 2.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및 계획기준 ▶ 4)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구 분	변경 내용	공공기여율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 내외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없음	20% 내외

※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와 용도지역 변경(상향)이 중첩되는 경우 공공기여비율 총량은 각각의 총량을 합산 후 5%를 감한 비율로 한다.

- 7)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8) 재무성 검토(PI=0.12)에서 PI가 1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공사가 직접 사용에 따른 귀속임대료는 현금유입이 없는 항목으로 산정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추가로 임대료 활용하는 일부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변지역 임대료 시세가 낮아 임대료 수입 및 보증금이 낮게 책정된 것도 일부 작용한 결과임. <'21. 지방공기업평가원 최종보고서 요약본 중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 9) 경제적 타당성에서도 편익비용비율(B/C)이 0.82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민감도 분석 결과 비용이 18.1% 감소하거나 편익이 22.0% 증가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21. 지방공기업평가원 최종보고서 요약본 중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10) 시의회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22. 4월 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제306회 임시회)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22. 8월 민선 8기에서도 중랑구 공사 신속 이전으로 신내·망우동 균형발전 촉진을 공약한 바 있음.

- 이후 '23년에는 사옥 이전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SH 사옥 '전체'에서 '일부'만 이전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대신 공동주택(민간분양분, 388세대)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전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고, '25년에는 SH 직접시행 방식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신설된 프로젝트리츠¹¹⁾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¹²⁾.
- 총사업비는 '21년 계획(3,708억원) 대비 71% 증가된 5,151억원으로 공동주택의 선분양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¹³⁾이며, 변경된 계획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는 재무성(PI=1.12)과 경제성(B/C= 0.63)이 큰 폭으로 상향되어, SH가 프로젝트리츠로 현물·현금을 출자하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

-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용역기간: '25.9.29. ~ '26.5.28.(8개월)

분석항목	순현재가치[(F)NPV]	PI 또는 B/C	내부수익률[(F)IRR]
재무성	37,001백만원	1.12	11.87%
경제성	△115,209백만원	0.630	1.49%

- 한편, SH 신사옥 규모는 당초 연면적 65,000^{m²}에서 10,379^{m²}로 감소한 반면 신규 추가된 공동주택은 연면적 61,079^{m²}, 388세대(59^{m²} 194세대, 84^{m²} 194세대)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84,507^{m²})의 72.3%를 차지하여 SH 사옥 건립보다 공동주택 위주의 복합개발사업의 성격으로 전환된

11) < 프로젝트리츠 개요 >

※ 세부내용 [검토보고서 붙임 5] 참조

-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신설('25. 5. 27. 개정, '25. 11. 28. 시행)
- 특징 : 개발사업에 적합하도록 설립 절차를 간소화(인가→신고)하고, 1인 출자한도를 완화(50%→100%)
- 장점 : 민간분양아파트 건축 및 선분양 가능

12) '출자사업 추진계획 검토보고'(사장방침 제325호, 2025.7.3.)

총사업비 (100%)	자기자본(30%)		타인자본(70%)	
	SH(현물)(29%)	SH(현금)(1%)	분양대금(51%)	민간대출(19%)
13) 5,151억원	1,497억원	50억원	2,632억원	972억원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인 SH가 수익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공성 항목에 70%라는 큰 비중을 두고 사업시행 여부를 평가¹⁴⁾하는 중앙·공공기관과는 달리, 일반 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토¹⁵⁾함에 따라 타당성이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분양주택을 포함한 것은 사업성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됨.

- 또한 전체 사옥의 이전(개포동→신내동)이 일부만 이전하도록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초기 이전 계획 수립 당시부터 시민접근성, 직원들의 근로조건 변화 등 문제가 제기¹⁶⁾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사장실 및 직속부서 위주로만 옮겨감으로써¹⁷⁾ 주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접근 문제와 다수 SH 직원들의 통근 여건은 유지될 수 있는 절충적 대안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옥 조성 규모가 10,379㎡에 불과하고 사업부서가 아닌 핵심기능만 이전하는 것이 당초 정책목표인 지역 균형 발전에 기

14)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재정경제부, KDI공공투자관리센터, 13p)

또한, SH '21. 지방공기업평가원 최종보고서 요약본 중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도 KDI 지침 및 타당성조사 사례 등에 따르면 청사 및 사옥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재무성 검토를 생략하고 채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15)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2024.3., 행정안전부)

- 타당성 검토 주요내용(32p) : 개발환경 분석,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채원조달, 정책적 타당성

16) ‘SH노조 “공사 사옥, 강북 이전 중단해라”’(2021.8.18., 아주경제)

17) 이전 부서로는 사장실, 사장 직속 부서, 기획경영본부 등을 포함한 이전을 검토 중임.

계	업무공간		부속공간		
	사장실, 사장 직속	기획경영본부	회의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10,378.79㎡	1,934.00㎡	2,685.79㎡	1,547.00㎡	2,719.00㎡	1,493.00㎡

여할 수 있을지, 오히려 사옥의 분리로 SH 업무상의 비효율 또는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신내동 업무용지 개발사업 변경 비교표 〉

구 분	'21년 당초 계획	'25년 변경 계획
시행방식	SH 자체 시행	프로젝트리츠
개 요	사옥 전체 이전 + 공연장	사옥 일부 이전 + 공연장
총사업비	3,708억원	5,151억원
도시계획	변경없음 (용적률 400% / 높이90m / 공연장 600석 규모 ^{480억} 공공기여)	
건축계획	상업·업무시설, 공연장	분양주택 , 상업·업무시설, 공연장
건축규모	지하4층, 지상15층	지하3층, 지상29층
연면적	88,200.00㎡	84,507.23㎡
업무시설	74,478.40㎡	10,378.79㎡(2개층)
근린생활시설	4,271.60㎡	2,998.95㎡
문화집회시설	9,450.00㎡	10,050.00㎡
공동주택	-	61,079.49㎡(신규)
사옥면적	6.5만㎡	1만㎡이하(사업성확보 범위 내)
사업성	- 사옥취득은 “투자사업”에 해당 ¹⁸⁾ ⇒ 사옥은 매각 또는 운영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성 확보 어려움	- SH가 출자한 리츠는 현물배당 형태로 사옥 등을 청산할 수 있음 ¹⁹⁾ ⇒ 리츠사업 시 사옥은 “매각”형태로 적용 되어 사업성 확보 유리
재원조달	공사채 발행	공사채 발행 불필요
조감도		

○ 종합하면, SH 사옥 이전은 민선 7기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SH 사옥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학교

18)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신규투자사업의 정의

19) 「상법」 제12절 청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함

용지 폐지와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경제적 타당성 부족의 사유로 사옥의 일부만 이전하고, 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하며, SH 직접 시행이 아닌 프로젝트리츠²⁰⁾ 시행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이번 출자의 취지와 필요성은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타당성 검토 방법에 있어 중앙·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옥의 일부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SH 업무상 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회의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공동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여가복지 시설 등 추가 필요시설에 대하여는 사전검토 후 향후 설계공모 시('26.8월 예정) 공모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공연장은 세 부유형 및 운영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건축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20) '25. 5월 정부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발 이후 운영을 통해 투자자에 수익을 분산하여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FV대신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방식 개발 시동, 국토부 보도자료, 2025.6.18.), SH 사옥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프로젝트리츠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공공주택사업자인 SH가 프로젝트리츠를 재설립할 경우 다수의 시민 참여로 수익이 시민에게 돌아가거나 공공사업에 추진하는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부대의견

-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토록, 조직이전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이에 따라 업무시설 총 면적 확대 또는 업무시설 내 부속공간 축소 등을 고려하여 신사옥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할 것.
- 신사옥 설계공모 전에 위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것.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신내동 업무용지 복합개발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

의안 번호	3736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본 사업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 (중랑구 생활권계획)」에 따른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자 서울시장^{민선5기~9기} 주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중랑구 신내동으로의 일부 이전과 문화 집회시설(공연장) 확보 등을 위해 업무복합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리츠’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나. 2019년 8월 서울시장의 SH공사 사옥 이전 발표를 시작으로 市-區-SH간 중랑구 이전 협약체결, '20.12.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1.07. SH 자체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사업타당성 평가 등이 진행되었으나, 낮은 사업성과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 다. 이에 '25.11. 정부가 신규 도입한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방식을 출자사업으로 변경 및 도입시설의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됨.
- 라. 따라서, 정책 실현성을 확보하고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리츠 설립 및 출자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대상

- 1) 기관명칭 : (주)산내동업무용지복합개발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칭)
- 2) 총사업비 : 5,151억 원(예상)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 기준 적용
- 3) 총출자금 : 1,547억 원
 - 현금출자: 50억원(최소자본금)
 - 토지 현물출자: 1,497억원 *현물출자금액은 출자시 감정평가하여 확정 예정
- 4) 출자자 현황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 1,547억 원
- 5) 사업기간 : 2026년 7월 ~ 2032년 상반기

나. 사업방식

- 우리공사에서 현금출자(50억)를 통해 프로젝트리츠가 설립 자금을 조성하고 공사 보유 토지 현물출자. 리츠가 개발사업 시행, 준공 후 리츠 청산 시 공사는 재산 배분 등을 통해 업무시설 및 공연장 확보
- 원활한 자원조달을 위하여 수익시설(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을 통해 건설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이사회 결과 별도제출

※ 작성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운용본부 정태상/김현진(☎ 3410-8569/8574)